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689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0. 06.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12.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23. 10. 18.

기획행정위원회 상정·원안가결

2. 제안이유

가. 산부인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여성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산부인과 위탁 운영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나. 산부인과 운영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재계약)에 대한 고성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위탁근거

가. 지역보건법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업무의 위탁 및 대행)

나.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4. 위탁내용

가. 민간위탁(재계약) 개요

○ 위탁사무명: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 대 상 기 관 : 강병원(고성읍 중앙로 49, 대표자 강진구)

○ 위 탁 기 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 소요예산액: 연간 220백만 원(도비110, 군비110)

- 위탁 운영 소요경비 산출내역

구 분	산출기준	금 액(백만원)			비 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계		462	220	242	
인건비	○ 인건비 - 전문의 28,140,490 × 12 = 337,685,880 - 간호사 2,750,600 × 12 = 33,007,200 - 간호조무사 2,130,370 × 12 = 25,564,440	396	220	176	※ 자부담은 산부인과 진료 수입으로 충당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운영비	○ 퇴직적립금 - 전문의 2,345,040 × 12 = 28,140,480 - 간호사 229,220 × 12 = 2,770,640 - 간호조무사 177,530 × 12 = 2,130,360 ○ 4대보험(사업자 부담금) - 2,358,230 × 12 = 28,298,760 ○ 무료 검사 지원에 따른 본인부담금 - 총액 4,800,000원(400,000 × 12)	66		66	

나. 위탁사무 내용

- 전문인력 자체 채용(산부인과 전문의사 1명, 간호사 1명)
- (무료검사) 가임기 여성 풍진검사, 산전검사, 선천성기형아1, 2차검사
- 산부인과 외래진료

다. 수탁기관 선정: 재계약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재계약 적정성 심의 및 의회 동의를 거쳐 선정
 - 2023. 9. 22.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재계약 적격

라. 민간위탁(재계약) 필요성

- 관내 의료기관을 통한 산부인과 위탁 운영으로 의료취약지 여성건강 증진 향상에 기여
-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산부인과 위탁 운영 필요성에 86.3%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답함.

- 다년간의 산부인과 운영을 통해 도출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였고 진료환경개선에 노력함.
- 산부인과 운영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5. 추진현황 및 계획

- 가. 산부인과 운영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개최: 2023. 9. 22.
- 나. 산부인과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2023. 9. 27.
- 다. 산부인과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방침 결재: 2023. 10. 5.
- 라. 위·수탁 협약 체결, 공증: 2023. 11. 중

6. 기대효과

- 가. 산부인과 의료기관 위탁 운영으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 나. 임신부에게 산전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출산친화 환경 조성

7. 전문위원 검토요지

- 산부인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12.31.로 만료됨에 따라 계속해서 기존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동의안 내용 검토
 -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타당성
 - 「지역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군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일부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대상 사무인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은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하여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한 민간위탁 사무 기준에 적합함.

- 수탁기관 선정 방법의 적정성

- 2019년 최초 민간위탁 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이후 2021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성과평가 심사를 통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였고, 금회 다시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위탁기간 만료 90일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성과평가를 심사하여 결과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것임.

- 민간위탁 기간의 적정성

- 본 동의안의 위탁 기간은 2024. 1. 1.~2026. 12. 31.(3년)으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4조제2항에서 정한 5년 이내로 적정함.

- 민간위탁운영 소요 예산의 적정성

- 인건비와 운영비 462백만 원 중 연간 220백만원(도비 110백만 원, 군비 110백만 원)의 위탁운영비를 지원하고, 242백만 원은 진료수입으로 충당함.
-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3항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중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연도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를 제출하도록 동 조례가 개정되었으나 2024년 기준으로만 제출하였음.

- 위와 같이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와 타당성 등 동의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과 편의를 위해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사무를 기존 수탁업체에 재위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8.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9. 토 론 : 없음.

10. 심사결과 : 2023. 10. 18. 원안가결